

#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20%) △과태료 신설 등이다.

## 1. 부정수급 사전예방 기능 확충

### ① 정확한 피보험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관리 인프라 확충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

- ※ 수도권 총공사금액 200억이상 건설현장(’07.6) → 수도권 100억이상 건설현장(’07.하반기) → 전국 100억이상 건설현장(’08년)
-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 발송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07.7월 시행)
- 피보험자격 소급취득에 대한 엄격한 확인·처리

○ 피보험자격을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근로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소급취득 인정

□ 유관기관 정보연계 확대 및 허위신고 적발에 활용 강화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자료(국세청) 등을 정기적으로 입수 → 의심사례 발굴 및 허위신고 면밀조사 실시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국세청 및 타 사회보험기관과 공유하는 방안 추진(관계기관 협의)

※ 비용 대비 혜택이 높은 고용보험에만 허위가입하는 부정행위 예방

□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신설

○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또는 동일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 명확화 → 브로커가 개입한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방지

※ 동일인이 고용관리책임자로 관련 없는 다수 건설현장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 ② 지원금 제도를 재설계하여 운영을 내실화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활동촉진 (Activation) 강화

○ 수급자 연령 및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급자는 매주 센터에 출석토록 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장기수급자 : 30세미만 150일, 30~49세 180일, 50세 이상 210일 이상

○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감액제도를 추가로 도입 <고용보험법 개

정>

※ 1회 거부시 구직급여 10% 감액 → 2회 거부시 30% 감액 → 3회 거부시 구직급여 지급정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 강화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인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 및 사중손실 방지 <시행령 개정 중>

☞ 고용안정사업 전반에 걸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07.하반기,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 수요자 중심 훈련시스템 정비 및 출결관리 강화

○ 근로자에게 직접 훈련비용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 (훈련바우처 제도)을 단계적 확대 →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06.11월 도입, '07년 본격시행) → 실업자('08년 시범사업 후 본격추진) → 중소기업근로자('09년 도입)

- 바우처 발급시 고용지원센터의 훈련상담을 의무화 →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지원

○ 출결관리 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 근로자수강지원금('07.3분기) → 실업자훈련 및 사업주위탁훈련 → 사업주 자체훈련

## ③ 부정수급 예방교육 강화 및 자진신고 촉진

○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명세통지서 등을 적극 활용, 부정수급 예방교육·안내를 강화

○ 매년 지원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

간」 정기 운영(상·하반기 연2회)

※ 강조기간 중 자진신고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2. 효과적인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구축

### ① 전산망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전산망 및 장애인공단전산망에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례(총 47개)에 대한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07.6월 완료)

→ 담당직원에게 자동으로 부정수급 의심사례 경보, 면밀조사 실시(조사결과 전산망 입력)

※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화면 예시: 붙임3

### ② 「고용보험 개인정보 조회내역 관리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 등을 조회한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구축('07.6월 완료)

→ 내부직원 및 외부인(브로커 등)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부정수급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 또는 적발

### ③ 유관기관 정보연계 강화

○ (모성보호급여) 사업주와 급여신청자간 동거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행자부 협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 연계 → 장애인공단에서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확인

### ④ 본부-고용정보원-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본부) T/F팀 구성(매월 점검회의 개최) → 부정수급

동향·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구성: 고용서비스혁신단장(팀장), 관련팀, 감사실, 고용정보원

○ (고용정보원) 「전산모니터링팀」 구성 → 의심사례 전산 모니터링, 지방관서 조사실적 및 부정수급 동향 분석

○ (고용지원센터) 청·지청 종합센터별로 상설 「부정수급 조사팀」 구성 → 부정수급 조사·처리 전담

### ⑤ 부정수급 제보제도의 활성화

○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조정(부정수급액의 10/100 → 20/100) 및 홍보 강화

→ 제보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

### ⑥ 조사대상을 무작위로 선정, 집중조사 실시

○ 각종 급여 수급자 및 사업장의 일정비율을 무작위로 선정, 정기적으로 집중조사 실시 → 부정수급 적발시 엄중 의법조치

## 3.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강화

### ①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합리적 정비

○ 과태료 규정 신설 등 제재 강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신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300만원 이하)

△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07.4월 완료)

△ 출결관리 조작 등 악질적인 부정수급을 한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위탁제한과 함께 **과태료 병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② 제재조치의 엄정한 집행

-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및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확행**
- ※ 고용보험전산망에 「**과태료 부과업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표준화 추진(PKMS 사업과 연계 추진)

\* PKMS(Process-Bas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업무프로세스 및 업무지식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 ’07년 : 피보험자격관리,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급여

’08년 :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외국인고용허가제

② 내부통제 장치 강화

- 청 종합센터에 전담반 형식의 「부정수급 조사팀」 구성
- 청 관내 부정수급 조사와 아울러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부정수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부여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

4. 부정수급 관리 역량의 강화

① PKMS 사업\*을 통한 업무표준화 추진(’07~’08년)

- 고용지원센터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재설계(BPR) 및 표준화 추진 → 각종 지원금 업무의 정확한 처리 도모



**우울증 노인들 독감 주사를 주의!**

노인들은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주 약한 스트레스만 받아도 질병에 걸리기 쉽다. 독감 예방주사도 자칫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키콜트-글레이저 박사가 평균 연령 71세 노인 119명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놓고 혈액의 변화를 지켜봤다. 건강한 노인들은 혈액에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배우자가 치매에 걸려 우울하게 지내는 노인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혈액에 염증이 생겼다. 평

소보다 혈중 염증이 30%나 늘어났다. 혈액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병, 관절염, 당뇨병, 골다공증, 암,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키콜트-글레이저 박사는 말한다. 부정적, 비관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이래서 단명 하는 것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 부정수급 적발사례(7.31 현재)

### 〈1〉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 (조사배경) '07.3월초 수서경찰서는 제보를 토대로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
- ※ 노동부는 「특별조사단」(서울청 주관)을 구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2,378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조사결과) 2,370명(조사대상의 99.7%)에 대한 조사 완료 → 부정 수급자 1,207명 / 부정수급액 4,577백만원 / 추가징수액 4,4478백만원(환수총액 9,055백만원)

〈유형〉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 양자가 공모하여 고용보험 허위취득 후 실업급여 수급

- (조치사항)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6,708백만원) / 부정수급자 형사고발조치 중(현재 371명)

### 〈2〉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특별조사

- (조사배경)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각종 지원금 별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추출, 실태점검 실시 ('07.4~6월, 6개청 특별조사팀)

※ 조사대상 : 고용안정사업 3,797개소, 모성보호급여 190개소, 훈련기관 195개소, 실업급여(사업장 103개소 · 수급자 1,560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개소

- (조사결과) 조사완료 → 부정수급 사업장 151개소(인원 543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75명 / 부정수급액 1,849백만원

〈주요유형〉 ① 고용안정사업 : 채용일자를 늦추어 신고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청년) 부정수급 ② 직업훈련 : 훈련기관 출석부 조작 ③ 실업급여 : 취업사실 은닉 ④ 장애인장려금 : 근로자 허위채용 ⑤ 모성보호급여 : 휴가 · 휴직기간 허위신고

- (조치사항)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환수총액 4,892백만원) /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및 훈련기관 인 · 지정 취소 조치 중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부정수급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업무전반에 걸쳐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 · 적발 · 조치하기 위한 대책 마련(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등)

## The joke is on you – 자네 웃기는군

“Herman, don't do that.” “What?”

“You leave your window shades up at night. When I passed your house last night, I saw you kissing your wife.” “Ha! The joke's on you. I wasn't home last night.”

“이봐, 좀 조심하게.” “뭘 말이야?”

“자네 밤에 창문커튼을 열어 놓았잖아. 간밤에 지나가다 자네가 아내에게 키스하는 걸 봤다구.”

“허어! 자네 웃기는군. 간밤에 난 집에 있지도 않았따구.”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

##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개선 과제	현행	개선 내용
<b>부정수급 예방기능 강화</b>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카드 단계적 확대	수도권 총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수도권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07.하) - 전국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0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 발송업무	센터 직접 수행 → 행정력 부족으로 누락 발생	전문 외부기관 위탁('07.7) → 누락없이 발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급취득에 대한 관리 강화	근로관계 명확한 확인 없이 소급취득 인정	근로관계 증빙서류 제출시만 소급취득 인정
유관기관 정보연계 확대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를 신고 누락 확인에 활용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국세청) 미활용 - 건설일용 고용보험 가입정보 국세청 및 타보험 미공유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를 허위 신고 적발에 활용 강화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 입수· 허위신고 적발에 활용 - 건설일용 고용보험 가입정보 국세청 및 타보험 공유 추진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신설	규정 없음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 신설
장기구직자에 대한 구직활동 의무 강화	장기수급자도 대부분 4주 1회 출석	장기수급자는 매주 출석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직업소개 등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1차 경고 후 바로 지급정지	1차거부시 10% 감액 → 2차 30% 감액 → 3차 지급정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방식 변경	취업시점에 일시 지급	2회 분할 지급 (취업후 / 취업 3개월 경과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정비	센터 등에 구직등록후 일정기간(1~6월) 경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사업주가 센터 등에 구인신청 및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훈련바우처 제도의 단계적 확대 및 훈련 상담 의무화	- 비정규직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운영 - 훈련상담 형식적 운영	- 실업자훈련 확대('08 시범 운영후 본격 시행) - 바우처 발급시 훈련상담 의무화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확대	없음	근로자수강지원금('07.3분기) 적용후 단 계적 확대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정기 운영	각종 지원금별로 부정기적 운영	각종 지원금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 운 영(연2회)

개선 과제	현행	개선 내용
<b>부정수급 적발장치의 강화</b>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미구축	- 47개 의심사례에 대한 경보시스템 구축 완료('07.6) - 의심사례 계속 발굴하여 시스템 강화
고용보험 개인정보 조회내역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미구축	구축 완료('07.6)
본부·고용정보원·센터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1명) 운영	본부(T/F)·고용정보원(전산모니터링 팀)·센터(부정수급 조사팀) 연계 운영
유관기관 정보연계 강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없음 -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 미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07.하) -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 연계('07.하)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 조정	부정수급액의 10/100	부정수급액의 20/100
무작위 선정 조사 실시	의심자 위주의 조사	지원자의 일정비율 이상 무작위 선정
<b>부정수급 제재조치 강화</b>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시 과태료 규정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시 과태료 규정 미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병과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 미비	악질적인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병과 신설
훈련과정 위탁(인정) 기준 보완	훈련기관이 위탁제한 후 과정일부만 변경하여 신청하여도 과정인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폐지 → 훈련기관에 대한 제한으로 일원화
제재조치의 집행	행정력 부족,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 미흡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확행
<b>부정수급 관리 역량의 강화</b>		
PKMS를 통한 업무표준화	매뉴얼 중심으로 업무처리(센터별 업무처리에 편차)	PKMS를 통한 업무표준화('07년 고용보험, '08년 워크넷)
내부통제 장치의 강화	본부(감사실) 중심 내부통제 → 통제장치 부족	청 부정수급 전담반에 감찰기능 부여 → 내부통제 강화